

조영현 연구위원, 최원 수석연구원

### 요약

교통사고와 관련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보험 가입이 증가하고 있음. 운전자보험 시장의 확대는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고 보험회사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함. 그러나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를 통한 판매경쟁 과열은 불완전 판매, 모럴해저드 유발,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보험회사는 상품 설계와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

○ 지난 수년 동안 운전자보험<sup>1)</sup> 시장은 교통사고와 관련된 법률 강화 추세로 인해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음

-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초회보험료의 연평균성장률(CAGR)은 8.6%로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, 특히 2020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법률처벌이 강화<sup>2)</sup>되면서 신규판매가 많이 증가하였음
  - 신계약 건수와 금액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2년에는 480만 건에 50조 원을 기록했으며, 초회보험료 비중도 장기보장성보험의 15.3%<sup>3)</sup>까지 증가함(그림 2), <그림 3> 참조)
- 2021년에는 과열경쟁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인해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, 2022년에 신규판매가 다시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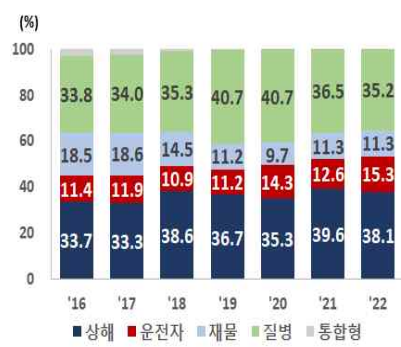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 및 증가율 <그림 2>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 및 금액 <그림 3> 장기손해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



주: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 각 월호



주: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 각 월호



주: 1)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 
 2) 장기 저축보험은 제외한 비중임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 각 월호

1)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상해, 형사·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임  
 2)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13(2020. 3. 25. 시행) 참조함  
 3) 일시납 비중이 큰 장기 저축보험을 제외한 장기보장성보험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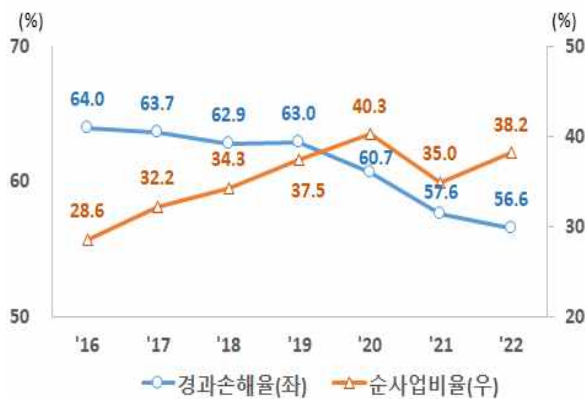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운전자보험 신규판매 증가는 주로 도로교통법 개정과 운전자보험 상품의 담보 확대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

- 2022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(교통약자) 등의 보호구역 지정 가능 범위 확대,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강화, 중대과실 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 등으로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었음<sup>4)</sup>
- 최근에 출시한 운전자보험 상품은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 추세에 맞추어 대부분 이전에 비하여 확대된 보장범위를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음
  - 2022년 이후 출시한 운전자보험 상품은 대부분 교통사고처리지원금,<sup>5)</sup> 변호사 선임비용 지급, 벌금에 대한 보장 범위 및 한도가 확대되었으며,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도 증액되는 경향을 보임

○ 운전자보험 시장이 확대되면서 경과보험료 증가로 인해 경험손해율은 하락하고 있지만, 신규판매 비용 증가로 인해 순사업비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임

- 순사업비율은 2016년 28.6%에서 2022년 38.2%로 상승한 반면, 같은 기간 경험손해율은 64%에서 56.6%로 하락함
  - 장기보험의 판매 비용은 초기에 크게 지출되고 보험금(손해액)은 초기에는 작게 발생하므로, 신규판매가 증가하는 장기보험 상품은 사업비율이 증가하는 반면, 손해율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
- 합산비율<sup>6)</sup>의 경우 판매가 급증했던 2019년과 2020년에 사업비율 증가로 100을 넘어서기도 했으나, 2022년에는 94.8%로 100을 하회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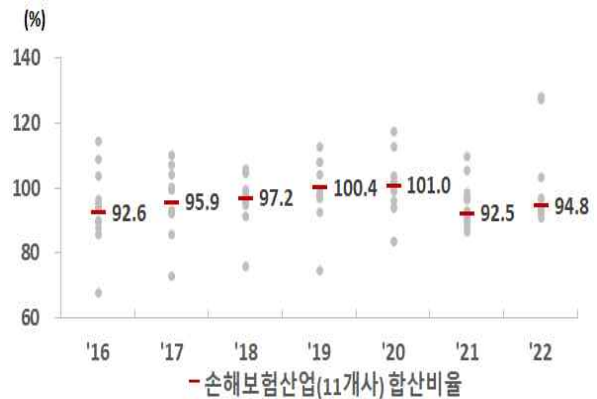
〈그림 4〉 운전자보험 경과손해율 및 순사업비율



- 주: 1)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 사 기준임  
 2) 경과손해율=발생손해액/경과보험료  
 3) 순사업비율=순사업비/경과보험료

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 각 월호

〈그림 5〉 운전자보험 합산비율 분포



- 주: 1) 붉은 실선(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)은 국내 일반 손해보험회사 11개 사 전체의 합산비율임  
 2) 합산비율=경과손해율+순사업비율  
 자료: 보험회사, 「업무보고서」 각 월호

4)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, 제12조의2(2022. 4. 20. 시행)

5) 운전자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형사처벌 발생에 대한 책임 비용에 대한 보장임

6) 합산비율은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합산한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손실과 이익을 구분함

-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 법률의 강화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, 이에 운전자보험 상품은 앞으로도 수요와 공급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
  -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보험의 보장 범위와 한도 조정의 필요성은 존재함
  - 또한, IFRS17 시행으로 보험계약마진이 높게 평가되는 보장성보험 상품 공급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, 이러한 측면에서도 운전자보험 상품의 지속적인 상품개발과 판매확대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
- 다만,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를 통한 판매경쟁 과열은 불완전 판매, 모럴해저드 유발, 손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, 보험회사는 상품 설계와 판매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
  - 과도한 보장 범위 및 한도 확대는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유발 가능성을 높이고, 장기적으로 보험회사의 손해율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, 적절한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설정 등의 사전적 위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
    -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높다면, 교통사고 관련 법률 강화의 사고 예방 효과를 감소시킬 수도 있음
    - 실손의료보험 등의 경험에 비추어 가입자나 이해관계자의 모럴해저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, 사전적 위험 관리 장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
  - 판매수익 확대를 위한 소비자들의 과도한 보장 선택을 지양하고 적절한 보장 수준의 계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판매정책이 필요하며, 소비자들도 운전자보험 상품에 대한 유의사항을 잘 살펴야 할 것임
    - 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과 관련한 소비자의 유의사항을 공지하고, 보험회사에게 과열경쟁에 대한 자제와 변호사 선임비용 한도에 대한 검토를 제시한 바 있음<sup>7)</sup>

---

7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2023. 2. 24), “운전자보험, 잘 알고 가입하세요!(소비자 유의사항)”; 금융감독원 업무자료(2023. 3. 27), 「형사합의금 및 변호사선임비용 가입금액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」